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윤서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8. 4.

발 의 자 : 윤서규 · 김영호 · 김익수
박순이 · 우진석 · 이갑선
임춘구 · 허 복(8인)

1. 제 안 이 유
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의 호칭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변경하고,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함

2. 주 요 내 용

-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으로 조문위치 등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 등)
-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『간사』의 호칭을 『부위원장』으로 변경 (안 제53조 · 제65조)

3. 참 고 사 항

- 「지방자치법」
- 구미시의회 회의규칙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로 한다.
제14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제53조 중 “간사와”를 “부위원장과”로 한다.
제65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제76조제1항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79조”로 한다.
제88조제1항 중 “법 제78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생략)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회시로부터 1시간에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(생략)	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63조제1항..... ③(생략)
제53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.	제53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부위원장과.....
제65조(위원회 회의록)①(생략) 1. ~ 11.(생략) ②(생략)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·날인한다.	제65조(위원회 회의록)①(현행과 같음) 1. ~ 11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.....부위원장이.....
제76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 ②(생략)	제76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.....법 제79조..... ②(현행과 같음)
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 ②~⑤(생략)	제88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①..... 법 제86조 ②~⑤(현행과 같음)

(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)

[illegible]